

▣ 일본 지자체, 재생에너지설비 대상 과세 조례 마련 움직임

- 일본 아오모리현은 육상풍력설비 등 기존 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과세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며,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이에 반발하고 있음.¹⁾
 - 아오모리현은 발전 사업에 자연이 훼손당하고 있다며 기존 재생에너지설비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, 연내에 과세 대상세율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현의회에 제출할 계획임.
 - 재생에너지 관련 세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총무성 장관의 동의가 필요함. 한편, 사업자측의 반대가 강하면 과세 조례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.
 - 이에 대해 사업자측은 일본풍력발전협회, 태양광발전협회, 재생에너지장기안정전원추진협회 등 3개 단체 명의로 ‘기존 사업에 대한 과세는 연기해야 한다’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.
 - 사업자측에서는 ‘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에 따라 투자했는데, 뒤늦게 시행되는 과세는 수익측면에서 큰 악영향을 준다’고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 - 경우에 따라 기존 재생에너지설비의 철수 혹은 신규 투자 검토가 필요하며 과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도입에 제동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.
 - 또한, 사업자측이 기존 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과세 조례에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FIT제도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재생에너지설비는 과세 비용을 전력판매가격에 전가할 수 없기 때문임.
 - 일반 시장 거래인 경우, 과세 비용을 전력판매가격에 가산하여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나, FIT제도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재생에너지설비로 발전된 전력의 판매가격은 매년 경제산업성에 의해 결정됨.
- 한편, 환경 보호, 소음 및 경관 침해 등을 이유로 재생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조례를 마련하여 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제한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음.
 - 미야자키현은 2023년 7월에 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해 대규모 삼림개발을 실시하는 재생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조례를 마련하였으며, 총무성의 동의를 얻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. 재생에너지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법정외세는 일본에서 첫 사례임.²⁾
 - 미야자키현은 ‘재생에너지지역공생촉진세’라는 명목으로 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해 0.5ha를 초과한 삼림개발을 실시하는 태양광·풍력·바이오매스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이익의 약 20%를 징수함.
 - 다만, 사전심사를 통해 사업 계획이 주민과의 합의 형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.
 - 미야자키현은 기존 재생에너지설비의 과세 대상 포함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였음.

1) 日本經濟新聞, 2024.11.15.

2) 日本經濟新聞, 2023.11.17.

- 오카야마현 마마사카시는 기존 재생에너지설비를 포함하여 태양광패널 면적에 따라 과세하는 조례를 마련하였으나, 사업자측이 강하게 반대하였음. 또한, 2022년 총무성으로부터 사업자측과의 재협의를 요구하는 등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.